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의한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공고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확인 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1일
산업통상부장관

처분 내용	사업자	품목	모델	안전확인 신고번호	사유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2개월)	우드라인	유아용 의자	유아용 의자	CB082R032 -3001	2025년 정기 4차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중결함)

※ 처분일 : 2026년 2월 11일